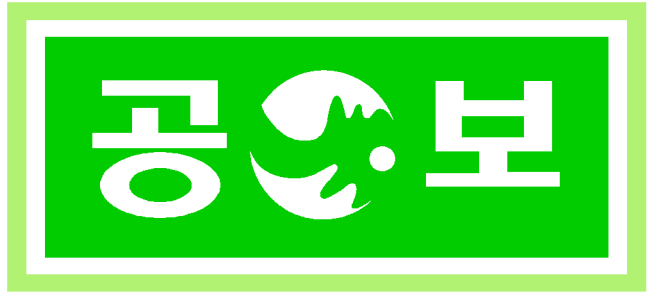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공 람 | 기 관 의 장 |
| | |

제 1074 호 2017. 7. 6. (목)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21호[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783호[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 | |
|--------|---|
| 안 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2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사로 24(중산동) 외 7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7.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구분 | 승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2-4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24(중산동) | 2017-07-06 | 중산지구 서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13-12-30 | |
| 2 | 울산광역시 북구 시계동 8-9 | 울산광역시 북구 정화길 91(시계동) | 2017-07-06 | 기존 지면마을인 정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04-08-09 | |
| 3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87B 12L |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18길 8-1(진장동) | 2017-07-06 |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04-12-27 | |
| 4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동 204-23외 1필지(연안동209-62) | 울산광역시 북구 상연암길 15-5(연암동) | 2017-07-06 | 웃마을이라고도 하며 연암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연암이라 불리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04-01-05 | |
| 5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7-7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17(중산동) | 2017-07-06 | 중산지구 동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13-12-30 | |
| 6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7-6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19(중산동) | 2017-07-06 | 중산지구 동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13-12-30 | |
| 7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61B 4L | 울산광역시 북구 명포로 196(진장동) | 2017-07-06 | 명포항 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01-03-22 | |
| 8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춘지구 78B 11L |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4길 11-1(진장동) | 2017-07-06 |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 2004-12-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7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6월 29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건립한 경우 경로당의 개·보수 비용부담 불가사항 삭제(안 제4조 제3호)
- 나.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보수범위 신설(안 제4조 2항)

3. 근거법규

- 가.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52)241-7664 팩스번호 : 052)241-766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울산광역시 복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되,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서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의 범위”는 노배·장판·창호·전등·씽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 <p>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p> | <p>제2조(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 1. ~ 3. (현행과 같음)</p> |
| <p>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p> | <p>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주택의 경로당을 건립한 경우</p> <p>4. (생 략)</p> <p><신 설></p> |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서 따라 설치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 수의 범위”는 노배·장판·창호·전등· 썩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 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p> |